

붙임 1
채용시험 가점 적용비율

구분	대상	내용	적용 전형	가점비율	비고 (증빙)
법정 가점	취업 지원 대상자	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3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4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6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	각 전형	해당 법률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만점의 5%~10%	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
특별 가점	장애인	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 또는 「장애인 복지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	각 전형	만점의 5%	장애인 증명서*
정부 권장 정책 가점	저소득층	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*에 속하는 사람 *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	서류 전형	만점의 3%	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 족증명서
	북한 이탈 주민	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	서류 전형	만점의 3%	북한이탈 주민 등록 확인서
	다문화 가족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	서류 전형	만점의 3%	가족관계 증명서
	청년	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2조, 제5조, 제6조 등에 따른 청년(만 15세~34세)인 자	서류 전형	만점의 3%	초본
	비수도권 지역인재	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역균형인재	서류전 형	만점의 3%	졸업 증명서

- *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가점 합격을 상한제(채용 선발예정인원의 30%)를 적용하되, 금번채용에서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 해당하지 않는 분야에는 적용하지 아니함.
- * 전형단계별 가산점을 부여하고, 가점이 중복될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하나를 적용함
- * 가점은 채용 단계별 과락기준에 미달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적용하되,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원점수에 가점을 적용한 점수를 기준으로 탈락 여부 결정(단, 원점수가 만점의 40% 미만인 과목이 있는 경우는 가점 제외)